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22일, 서삼석의원 등 2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삼석 의원)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3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재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 ☐ 개정안은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중 농업정책자금 이자의 감면뿐만 아니라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유사입법례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에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리 인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 피해보상 대책 마련

- ☐ 정부가 재해로 인한 농어가 피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재해 농어가에 대한 생산량 감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농어가의 재생산 능력과 생산활동의 기반을 보장하여 조속한 피해 복구를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상 재해대책비는 피해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및 생계 안정에 필요한 비용(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생산량 손

실에 대한 보상은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 중임.

따라서 개정안 도입 시 피해보상에 대한 재해대책과 보험 간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